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14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정태호 · 이연희 · 김주영
김태년 · 이학영 · 이광재
윤후덕 · 이주희 · 안도걸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구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데 비하여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 관련 재산 등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

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억4천만원”을 “2억8천만원”으로 한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	5천200만원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8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600만원 미만	18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700분의 180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310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31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700만원 미만	31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천300분의 310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60
나	800만원 이상 1천800만원 미만	360만원
다	1천800만원 이상 5천200만원 미만	3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800만원) × 3천400분의 360

제100조의5제4항 중 “1억7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 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 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	2. ----- ----- ----- ----- ----- ----- ----- ----- ----- -----

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
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
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3. (생 략)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
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 ⑦ (생 략)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
액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 가구	5천200만원

3. (현행과 같음)

4. -----

-----2억8천만원-----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

1. -----

--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u>400만원</u> 미만	$\frac{\text{총급여액 등} \times 400\text{분의}}{165}$
나	<u>400만원</u> 이상 <u>900만원</u> 미만	165만원
다	<u>900만원</u> 이상 <u>2천200만원</u> 미만	$\frac{165\text{만원} - (\text{총급여액 등} - 900\text{만원}) \times 1\text{천}300\text{분의}}{165}$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u>700만원</u> 미만	$\frac{\text{총급여액 등} \times 700\text{분의}}{285}$
나	<u>700만원</u> 이상 <u>1천400만원</u> 미만	285만원
다	<u>1천400만원</u> 이상 <u>3천200만원</u> 미만	$\frac{285\text{만원} - (\text{총급여액 등} - 1\text{천}400\text{만원}) \times 1\text{천}800\text{분의}}{285}$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u>800만원</u> 미 만	$\frac{\text{총급여액 등} \times 800\text{분의}}{330}$
나	<u>800만원</u> 이 상 <u>1천700만원</u> 미만	330만원
다	<u>1천700만원</u> 이상 <u>4천400만원</u> 미만	$\frac{330\text{만원} - (\text{총급여액 등} - 1\text{천}700\text{만원}) \times 2\text{천}700\text{분의}}{330}$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u>400만원</u> 미만	$\frac{\text{총급여액 등} \times 400\text{분의}}{180}$
나	<u>400만원</u> 이상 <u>900만원</u> 미만	180만원
다	<u>900만원</u> 이상 <u>2천600만원</u> 미만	$\frac{180\text{만원} - (\text{총급여액 등} - 900\text{만원}) \times 1\text{천}700\text{분의}}{180}$

2. -----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u>700만원</u> 미만	$\frac{\text{총급여액 등} \times 700\text{분의}}{310}$
나	<u>700만원</u> 이상 <u>1천400만원</u> 미만	310만원
다	<u>1천400만원</u> 이상 <u>3천700만원</u> 미만	$\frac{310\text{만원} - (\text{총급여액 등} - 1\text{천}400\text{만원}) \times 2\text{천}300\text{분의}}{310}$

3. -----

목 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u>800만원</u> 미 만	$\frac{\text{총급여액 등} \times 800\text{분의}}{360}$
나	<u>800만원</u> 이 상 <u>1천800만원</u> 미만	360만원
다	<u>1천800만원</u> 이상 <u>5천200만원</u> 미만	$\frac{360\text{만원} - (\text{총급여액 등} - 1\text{천}800\text{만원}) \times 3\text{천}400\text{분의}}{360}$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u>1억7천만원</u>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④ ----- ----- ----- <u>2억원</u>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